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영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72

발의연월일: 2024. 6. 13.

발 의 자:김영진·백혜련·이학영

강유정 · 김성회 · 김승원

염태영 · 정성호 · 이연희

김준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·특별자치도와 시·군·자치구로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"특례시"의 경우 행정수요가 광역시 수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행정·재정 운영 및 국가의지도·감독에 대해서 일정한 특례를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동일한 규정의 적용만을 받도록 되어 있어 다양한측면에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유형 중 시와 특례시를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그 특성에 맞게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1항제2호 등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471호)의 의결을 전 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시·군"을 "특례시·시·군"으로 한다.

2. 특례시, 시, 군, 구

제3조제2항 본문 중 "시는"을 "특례시와 시는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시에는"을 "특례시와 시에는"으로 한다.

제5조제11항 전단 중 "시·군"을 "특례시·시·군"으로 한다.

제6조제10항 전단 중 "시·군"을 "특례시·시·군"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"시·군"을 "특례시·시·군"으로 한다.

제10조의 제목 중 "시·읍"을 "특례시·시·읍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"시·읍"을 "특례시·시·읍"으로 한다.

① 특례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100만 이상이되어야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"시·군"을 각각 "특례시·시·군"으로 한다.

제12조제3항 중 "시·군"을 "특례시·시·군"으로 한다.

제14조제1항제1호가목·라목·마목 및 바목 중 "시·군"을 각각 "특례시·시·군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제3항 중 "시·군"을 각각 "특례시·시·군"으로 한다.

2. 특례시 · 시 · 군 및 자치구

제1호에서 시·도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. 다만, 특례시와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해서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.

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198조"를 "특례시와 제198조"로, "주무부장관에게, 시·군"을 "주무부장관에게, 특례시·시·군"으로 한 다.

제30조 중 "시·군"을 "특례시·시·군"으로 한다.

제35조 중 "시장·군수"를 "특례시장·시장·군수"로 한다.

제49조제1항 중 "시·군"을 "특례시·시·군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 항 전단 중 "시·군"을 "특례시·시·군"으로 한다.

제57조제1항 중 "시·군"을 "특례시·시·군"으로 한다.

제102조제2항 중 "시·군"을 "특례시·시·군"으로 한다.

제105조제5항제2호 중 "시·군"을 "특례시·시·군"으로 한다.

제106조 중 "시에"를 "특례시에 특례시장, 시에"로 한다.

제110조 본문 중 "시장・군수"를 "특례시장・시장・군수"로 한다.

제113조제1항 후단 중 "시·군"을 "특례시·시·군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"시·군"을 "특례시·시·군"으로 한다. 제115조 본문 중 "시·군"을 "특례시·시·군"으로, "시장·군수"를 "특례시장·시장·군수"로 한다.

제132조제1항 중 "시장"을 "특례시장 및 시장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 항 중 "시장·군수"를 "특례시장·시장·군수"로 한다.

제133조 중 "구청장은 시장"을 "구청장은 특례시장이나 시장"으로 한다.

제142조제1항 중 "시·군"을 "특례시·시·군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 항 중 "시·군"을 "특례시·시·군"으로 한다.

제149조제2항 본문 중 "시·군"을 "특례시·시·군"으로 한다.

제150조제2항 중 "시·군"을 "특례시·시·군"으로 한다.

제166조제2항제2호·제3호 및 제5호 중 "시·군"을 각각 "특례시·시·군"으로 한다.

제169조제1항 후단 중 "시·군"을 "특례시·시·군"으로 한다.

제173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"시·군"을 각각 "특례시·시·군"으로 한다.

제176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"시·군"을 각각 "특례시·시·군"으로 한다.

제180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"시·군"을 각각 "특례시·시·군"으로 한다.

제182조제1항제3호 중 "시장·군수"를 "특례시장·시장·군수"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"시·군"을 "특례시·시·군"으로 한다.

제185조제1항 중 "시·군"을 "특례시·시·군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 항 중 "시·군"을 "특례시·시·군"으로 한다.

제188조제1항 중 "시·군"을 "특례시·시·군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시장·군수"를 "특례시장·시장·군수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중 "시장·군수"를 각각 "특례시장·시장·군수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중 "시장·군수"를 각각 "특례시장·시장·군수"로 한다.

제189조제1항 중 "시·군"을 "특례시·시·군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시장·군수"를 "특례시장·시장·군수"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중 "시장·군수"를 "특례시장·시장·군수"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"시장·군수"를 "특례시장·시장·군수"로 한다.

제192조제1항 중 "시·군"을 "특례시·시·군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시·군"을 "특례시·시·군"으로, "시장·군수"를 각각 "특례시장·시장·군수"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"시·군"을 "특례시·시·건"으로 한다.

제19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대도시"를 "지방자치단체"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특례시

제199조제6항 후단 중 "시장·군수"를 "특례시장·시장·군수"로 한다.

제202조제3항 후단 중 "시장·군수"를 "특례시장·시장·군수"로 한다.

제207조 중 "시・군"을 "특례시・시・군"으로 한다.

제210조 본문 중 "시·군"을 각각 "특례시·시·군"으로 한다.

제211조제2항 중 "시·군"을 각각 "특례시·시·군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시·군"을 각각 "특례시·시·군"으로, "시장"을 "특례시 장·시장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지방자치단체의 종류) ①	제2조(지방자치단체의 종류) ①
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	
지 종류로 구분한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<u>시, 군, 구</u>	2. <u>특례시, 시, 군, 구</u>
② 지방자치단체인 구(이하	2
"자치구"라 한다)는 특별시와	
광역시의 관할 구역의 구만을	
말하며,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	
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	
라 <u>시·군</u> 과 다르게 할 수 있	<u>특례시·시·군</u>
다.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3조(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	제3조(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
관할) ① (생 략)	관할) ① (현행과 같음)
②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	2
도, 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	
라 한다)는 정부의 직할(直轄)	
로 두고, <u>시는</u> 도 또는 특별자	, <u>특례시와 시는</u>
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, 군은	
광역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의	
관할 구역 안에 두며, 자치구는	
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	

안에 둔다. 다만,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시 또는 군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.

- ③ (생략)
- ④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, 그 밖의 지역에는 읍・면을 두되,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 ・면・동을 둘 수 있다.
- ⑤ (생략)
- 제5조(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) ① ~ ⑩ (생 략)
 -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 각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과 관련하여 제7항제1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할때 같은 시·도 안에 있는 관계 시·군 및 자치구 상호 간매립지 조성 비용 및 관리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조정(調整)이 필요한 경우 제1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

3 (현행고	같	음)			
4 -						
<u>특례</u>	시와	시야	<u> 는</u> -			
	-1 -2 -3		^ \			
(5) (현행고	├ 같·	음)			
웨5조(지방지	P치 단	·체의	명	칭과	구
	지방지 ① ~					구
	1 ~	10 (과 집		구
역)	1 ~	10 ((현행	과 집		구
역)	1 ~	10 ((현행	과 집		구
역)	1 ~	10 ((현행	과 집		구
역)	1 ~	10 ((현행	과 집		· 구
역) ① - 	① ~	10 ((현행 	과 7 	(분유)	
역) ① - 	1 ~	10 ((현행 	과 7 	(분유)	
역) ① - 	① ~	10 ((현행 	과 7 	(분유)	
역) ①	① ~	10 ((현행 	과 7 	(분유)	
역) ①	① ~	10 ((현행 	과 7 	(분유)	
역) ① - 	① ~	10 ((현행 	과 7 	(분유)	
역) ① - 	① ~	10 ((현행] • 교	과 7 	(분유)	

권으로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조정 결과의 통보 및 조정 결정 사항의 이행은 제165조제 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.

제6조(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등) ① ~ ⑨ (생략)

⑩ 행정안전부장관은 경계변경 의 조정과 관련하여 제7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할 때 같은 시·도 안에 있는 관계 시・군 및 자치구 상호 간 경 계변경에 관련된 비용 부담, 행 정적 · 재정적 사항 등에 관하 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65 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의 • 의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조정 결과의 통보 및 조정 결정 사항의 이행은 제16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.

제8조(구역의 변경 또는 폐지・

제6조(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
경계변경 등) ① ~ ⑨ (현행과
같음)
①
특례시·시·군
 제8조(구역의 변경 또는 폐지·

설치・분리・합병 시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) ① (생 략)
② 제1항의 경우에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하면 시・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, 시・군 및 자치구에서는 특별시장・광역시장・특별자치시장・도지사・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・도지사"라 한다)가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.

제10조(<u>시·읍</u>의 설치기준 등) > <u><신 설></u>

<u>①</u> ~ <u>③</u> (생 략)

④ 시·읍의 설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11조(사무배분의 기본원칙) ① 7 (생 략)
 -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사무 를 배분하는 경우 지역주민생 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

설치·분리·합병 시의 사무와
재산의 승계) ① (현행과 같음)
②
특례시
·시·군
· 제10조(<u>특례시·시·읍</u> 의 설치기
준 등) ① 특례시는 그 대부분
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
<u>100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.</u>
$\underline{2} \sim \underline{4}$ (현행 제 1 항부터 제 3
항까지와 같음)
<u>⑤</u> 특례시·시·읍
제11조(사무배분의 기본원칙) ①
(현행과 같음)
②

는 원칙적으로 <u>시·군</u> 및 자치 구의 사무로, <u>시·군</u> 및 자치구 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 ·도의 사무로, 시·도가 처리 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 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

- 제12조(사무처리의 기본원칙) ① •② (생 략)
 -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, <u>시·군</u> 및 자치구는 해당구역을 관할하는 시·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수 없다.
- 제14조(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) ① 제13조에 따 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 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하 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제13조제2항제1호의 사무 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로 한다.
 - 1. 시·도 가.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

<u>특례시·시·군</u>
특례시
<u></u> <u>·시·군</u>
,
③ (현행과 같음)
제12조(사무처리의 기본원칙) ①
• ② (현행과 같음)
③
<u>특례시·시·군</u>
제14조(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
사무배분기준) ①
/
1
가

상의 시・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

- 나. 다. (생략)
- 라. 국가와 시·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・조정 등의 사무
- 마. 시・군 및 자치구가 독자 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
- 바. 2개 이상의 시·군 및 자 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무
- 2. 시·군 및 자치구 외한 사무. 다만,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해서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.
- ② (생략)
- ③ 시・도와 시・군 및 자치구 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겹

<u></u> 특례시·시·군
나.ㆍ다. (현행과 같음)
라 <u>특례시·시·군</u>
마. <u>특례시·시·군</u>
바 <u>특례시·시</u>
<u>· 군</u>

- 2. 특례시 · 시 · 군 및 자치구 제1호에서 시·도가 처리하는 제1호에서 시·도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 외한 사무. 다만, 특례시와 인 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해서 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 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 다.
 - ② (현행과 같음)
 - ③ -----특례시·시·군--

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, 사무가 서로 겹치면 <u>시·군</u>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한다.

제21조(주민의 감사 청구) ① 지 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 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(「공직 선거법 18조에 따른 선거 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. 이 하 이 조에서 "18세 이상의 주 민"이라 한다)은 시·도는 300 명.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, 그 밖의 시・군 및 자치구는 150명 이 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 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 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 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・도 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, 시・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 ·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.

<u>특례시ㆍ시ㆍ군</u>
· 제21조(주민의 감사 청구) ①
특례시와 제198조
주무부장관에게, 특례시·시· <u>군</u>

- 1. 2. (생략)
- ② ~ ⑭ (생 략)
- 제30조(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)
 <u>시·군</u>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·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.
- 제35조(보고)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경우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, 규칙은 공포 예정일 15일 전에 시·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, 시절·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·도지사에게 그 전문(全文)을 첨부하여 각각 보고하여야하며, 보고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하다.
- 제49조(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 권)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 하여 시·도에서는 14일의 범 위에서, <u>시·군</u> 및 자치구에서

1.·2. (현행과 같음)
② ~ ⑭ (현행과 같음)
제30조(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)
<u>특례시·시·군</u>
제35조(보고)
특
제49조(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
권) ①
특례시·시·군

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 시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·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·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·도의회와 신·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있다. 이 경우 국회와 시·도의회안 기로 한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.

④ ~ ⑦ (생 략)

제57조(의장·부의장의 선거와 지임기)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 의원 중에서 시·도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

② (현행과 같음)	
③	
	<u>특</u>
<u>례시·시·군</u>	
④ ~ ⑦ (현행과 같음)	
제57조(의장·부의장의	선거와
임기) ①	
	- <u>특례시</u>
<u>·시·군</u>	

출하여야 한다.

- ②·③ (생 략)
- 제102조(사무처 등의 설치) ① (생 략)
 - ② 시·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 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, 사 무국·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 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.
 - ③ (생략)
- 제105조(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) ① ~ ④ (생 략)
 - ⑤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 원으로 구성한다.
 - 1. (생략)
 - 2. <u>시·군</u> 및 자치구: 15명 이 내
 - ⑥ ~ ⑩ (생 략)
- 제106조(지방자치단체의 장) 특별 시에 특별시장, 광역시에 광역 시장,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 장,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

	②・③ (현행과 같음)
제	102조(사무처 등의 설치) ①
	(현행과 같음)
	② <u>특례시·시·군</u>
	③ (현행과 같음)
제	105조(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
	인수위원회) ① ~ ④ (현행과
	같음)
	5
	1. (현행과 같음)
	2. 특례시·시·군
	⑥ ~ ⑩ (현행과 같음)
제	106조(지방자치단체의 장)

를 두고, <u>시에</u> 시장, 군에 군수,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.

제110조(지방자치단체의 폐지・ 설치 • 분리 • 합병과 지방자치 단체의 장) 지방자치단체를 폐 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을 선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출 될 때까지 시·도지사는 행정 안전부장관이, 시장・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 · 도지사 가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할 사 람을 지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둘 이상의 동격의 지방자치단 체를 통폐합하여 새로운 지방 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지정 한다.

제113조(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체 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) ① 수 사기관의 장은 체포되거나 구 금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있

	<u>특례시에 특례시장,</u>
	시에
제	110조(지방자치단체의 폐지・
	설치・분리・합병과 지방자치
	단체의 장)
	특례시장·시장·
	·
	<u> 군수</u>
ارد	
세	113조(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체
	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) ①

으면 지체 없이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.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실 을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<u>시·군</u> 및 자 치구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 고할 때에는 시·도지사를 거 처야 한다.

② 각급 법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되면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.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실을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하며, 시·군 및 자치구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보고할 때에는 시·도지사를 거쳐야한다.

제115조(국가사무의 위임) 시·도 저와 시·군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시·도지사와 시장·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법령

<u>특례시·시·군</u>
②
<u>특례시·시·</u>
<u> 군</u>
<u>.</u>
]115조(국가사무의 위임)
<u>특례시·시·군</u>
<u>특례시장·시</u>
<u>장·군수</u>

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제132조(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) 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보하되, 시장이 임명한다.
 - ② 읍장·면장·동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, <u>시장·</u> <u>군수</u>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.
- 제133조(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)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시장, 읍장·면장은 시장(구 가 없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)이나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)의 지휘·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- 제142조(예산의 편성 및 의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· 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

제	132조(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) ①
	<u>특례시장 및 시장</u>
	· ②특례시
	<u>장·시장·군수</u>
제	133조(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 무권한)
	<u> 구청장은 특례시장이나 시장</u>
제	 142조(예산의 편성 및 의결) ①

- 지, <u>시·군</u> 및 자치구는 회계연 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시·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 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 지, <u>시·군</u> 및 자치구의회는 회 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 하여야 한다.
- ③ ④ (생 략)

제149조(예산의 이송ㆍ고시 등)

- ① (생략)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이송받으면 지체 없이 시·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·도지사에게 각각보고하고,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한다. 다만, 제121조에 따른재의 요구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50조(결산) ① (생 략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·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, <u>시·군</u> 및자치구에서는 시·도지사에게

	<u></u> 흑데시·시·단
	2
	<u>특례시·시·군</u>
	③・④ (현행과 같음)
제	149조(예산의 이송・고시 등)
	① (현행과 같음)
	②
	<u>특례시·시·</u>
	<u> 군</u>
제	150조(결산) ① (현행과 같음)
	②
	<u></u> 특례시·시
	• 군

각각 보고하고, 그 내용을 고시 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

- 제166조(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 저 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)①(생략)
 -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·의결한 다.
 - 1. (생략)
 - 2. 시·도를 달리하는 <u>시·군</u>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
 - 3. 시·도와 <u>시·군</u>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
 - 4. (생략)
 - 5. 시·도를 달리하는 <u>시·군</u> 및 자치구와 지방자치단체조 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
 - 6. (생략)
 - ③ ~ ⑦ (생 략)

③ (현행과 같음)
제166조(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
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
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
1. (현행과 같음)
2 <u>특례시</u>
<u>•시·군</u>
3특례시·시·군
4. (현행과 같음)
5특례시
<u>· 시·군</u>
<u>// L</u>
6. (현행과 같음)
3 ~ ⑦ (현행과 같음)
제169조(행정협의회의 구성) ①

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 다)를 구성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·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, 시·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 이면 시·도지사에게 이를 보 고하여야 한다.

②·③ (생 략)

제173조(협의사항의 조정) ① 협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을 요청하면 시·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, 시·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시·도지사가조정할 수 있다. 다만, 관계되는 시·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·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176조(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 지립)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

<u>특례시·시·군</u>
②・③ (현행과 같음)
제173조(협의사항의 조정) ①
특례시·시·군
<u> </u>
= -11 \1 \1
<u>특례시·시·</u> -
<u> </u>
② (현행과 같음)
제176조(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
립) ①

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·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, 시·군 및 자치구는 시·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시·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·군에 걸쳐 있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(생 략)

제180조(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지 도·감독) ① 시·도가 구성원 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 전부장관, 시·군 및 자치구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1차로 시·도지사, 2차로 행정 안전부장관의 지도·감독을 받는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·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·도에 걸쳐 있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

<u>특</u>
례시·시·군
<u>특례시·시·군</u>
② (현행과 같음)
제180조(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지
도·감독) ①
<u></u> 특례시·시·군
특례
<u>시·시·군</u>

안전부장관의 지도·감독을 받 는다.

② (생략)

- 제182조(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형의체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,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수 있다.
 - 1. 2. (생략)
 - 3. <u>시장·군수</u> 및 자치구의 구 청장
 - 4. <u>시·군</u> 및 자치구의회의 의 장
 - ② ~ ⑦ (생 략)
- 제185조(국가사무나 시·도 사무 저러의 지도·감독) ① 지방자 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·도에서는 주무부장관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시·도 지사,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·감독을 받는다.
 - ② 시·군 및 자치구나 그 장

 ② (현행과 같음)
제182조(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
협의체) ①
 1.·2. (현행과 같음)
1. · 2. (연행과 실금) 3. 특례시장 · 시장 · 군수
4. <u>특례시·시·군</u>
② ~ ⑦ (현행과 같음)
제185조(국가사무나 시·도 사무
처리의 지도·감독) ①
트 게 기
<u>특례시·</u> 시·구
시·군
· ② 특례시·시·군

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·도 의 사무에 관하여는 시·도지 사의 지도·감독을 받는다.

제188조(위법 · 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의 시정) ① 지방자치단체 의 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의 장(제103조제2항에 따른 사 무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 장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 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 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 · 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 이, 시・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 는 시 · 도지사가 기간을 정하 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 고,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 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.

② 주무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<u>시장·군수</u>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침에도 불구하고 시·도지사가 제1

.
제188조(위법·부당한 명령이나
처분의 시정) ①
<u>특례시·시·군</u>
②
<u>특례시장·시장</u>
<u>· 군수</u>

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지 아 니하면 시·도지사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도록 명 할 수 있다.

- ③ 주무부장관은 시·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시장·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,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이 시장·군수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수있다.
- ④ 주무부장관은 시·도지사가 시장·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 장에게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 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 니한 데 따른 취소·정지를 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·도 지사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장 ·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것을 명하고, 그 기간에

③
<u>특례시장·시장·</u>
<u> 군수</u>
<u>특례시장·시장·군수</u>
4
<u>특례시장·시장·군수</u>
<u>특례시장·시장·군수</u>

이행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 이 이를 직접 취소하거나 정지 할 수 있다.

⑤ • ⑥ (생 략)

제189조(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에 따라 그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나시·도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인정되면 시·도에 대해서는주무부장관이,시·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시·도지사가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사항을 명령할수 있다.

② (생략)

③ 주무부장관은 <u>시장·군수</u>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법령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 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 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됨 에도 불구하고 시·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·도지사에게

⑤·⑥ (현행과 같음)
제189조(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
한 직무이행명령) ①
<u>특례시·시·군</u>
② (현행과 같음)
③ <u>특례시장·</u>
<u>시장·군수</u>

기간을 정하여 이행명령을 하 도록 명할 수 있다.

- ④ 주무부장관은 시·도지사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행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시장·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이행명령을 하고,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이 직접 대집행등을 할 수 있다.
- ⑤ 주무부장관은 시·도지사가 시장·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 장에게 제1항에 따라 이행명령 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 니한 데 따른 대집행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·도지사 에게 기간을 정하여 대집행등 을 하도록 명하고, 그 기간에 대집행등을 하지 아니하면 주 무부장관이 직접 대집행등을 할 수 있다.

⑥ (생략)

제192조(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저 제소) ① 지방의회의 의결이

4
<u>특례시장·시장·군수</u>
⑤
특례시장·시장·군수
⑥ (현행과 같음)
∥192조(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
제소) ①

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· 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, 시·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·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, 재의 요구 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 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 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.

② 시·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시·도지사가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게하지 아니한 경우 주무부장관이 직접 시장·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할 수 있고, 재의 요구 지시를 받은 시장·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지방의회에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한다.

<u>특례시·시·군</u>
·.
② <u>특례시·시·군</u>
<u>특례시장·</u>
<u>시장·군수</u>
<u>특례시장·시장·군수</u>

- ③ ④ (생 략)
- ⑤ 주무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·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, 시·로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·도지사(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직접 재의 요구 지시를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가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.
- ⑥ ~ ⑨ (생 략)
- 제198조(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) ① (생 략)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·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<u>대도시</u> 및 시·군·구의 행정,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·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

③・④ (현행과 같음)
5
<u>례시·시·군</u>
·.
⑥ ~ ⑨ (현행과 같음)
세198조(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
인정) ① (현행과 같음) -
②
<u>지방자치단체</u>

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.

- 1. <u>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(이</u> 하 "특례시"라 한다)
- 2. (생략)
- ③ (생략)

제199조(설치) ① ~ ⑤ (생 략)

- ⑥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후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규약의 내용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장・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일 때에는 그 승인사항을 시・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.
- 제202조(규약 등) ①·② (생략)
 - ③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장·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일 때에는 그 승인사

<u>.</u>
<u>1. 특례시</u>
2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 제199조(설치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⑥
 <u>특례시장·시장·군수</u>

항을 시·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.

제207조(사무처리상황 등의 통지)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 무처리 상황 등을 구성 지방자 치단체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 관(시·군 및 자치구만으로 구 성하는 경우에는 시·도지사를 포함한다)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.

제210조(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의 준용) 시·도, 시·도와 시·군 및 자치구 또는 2개 이상의 시·도에 걸쳐 있는 시·
군 및 자치구로 구성되는 특별 지방자치단체는 시·도에 관한 규정을, 시·군 및 자치구로 구성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
·군 및 자치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 다만, 제3조, 제1장제 2절,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, 제17조제3항, 제25조, 제4장, 제38조, 제39조,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, 같은 조 제3항, 제41조, 제6장제1절제1관, 제10

··
제207조(사무처리상황 등의 통지)
<u>특례시·시·군</u>
 제210조(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
정의 준용) 특례시·시·군
<u>특례시·시·군</u>
<u>특례시·시·군</u>
<u>특례시</u>
<u>·시·군</u>

6조부터 제108조까지, 제110조, 제112조제2호 후단, 같은 조 제3호, 제123조, 제124조, 제6장제3절(제130조는 제외한다)부터 제5절까지, 제152조, 제166조, 제167조 및 제8장제2절부터 제4절까지, 제11장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제211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① 7 (생 략)
 - ② 다른 법률에서 시·도 또는 시·도지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02조제1항에 따른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범위에서는 시·도, 시·도와 시·군 및 자치구 또는 2개 이상의 시·도에 걸쳐 있는 시·군 및 자치구로 구성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 - ③ 다른 법률에서 <u>시·군</u> 및 자치구 또는 <u>시장·군수</u> 및 자 치구의 구청장을 인용하고 있

제211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①
(현행과 같음)
②
<u>특례시·시·군</u>
특례시·시
<u>· 군</u>
<u>.</u>
③특례시·
<u>시·군</u> <u>특례</u>
시장·시장

는 경우에는 제202조제1항에 따른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범위에서는 동일한 시·도 관할 구역의 <u>시·</u> 그 및 자치구로 구성하는 특별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지방자 치단체의 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<u></u> 특례
시·시·군